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대한 수정(안)

의안 번호	관련 216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21.

제출자 : 김영진 위원

1. 수정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수익금의 직접 사용금지, 동법 제16조의 수입대체 경비의 직접 사용 규정에 위배됨으로 제10조제2항을 삭제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오기정정이 안 제36조제1호, 제5호 및 안 38조 제1항 수정
-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칙 신설

2. 주요내용

- 안 제10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,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
- 안 제36조제3항제1호 “영 제38조제1항제7호. 제8호. 제13호”를 “영 제38조제1항 제6호. 제7호. 제12호”로 수정
- 안 제36조제3항제5호 “영 제38조제1항제5호”를 “영 제38조제1항제4호”로 수정
- 안 제38조제1항 “영 제38조제1항제24호”를 “영 제38조제1항제23호”로 수정
- “부칙 제3조(사용.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 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.수익허가.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”를 신설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,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 한다.

제36조제3항제1호 “영 제38조제1항제7호.제8호.제13호” 를 “영 제38조제1항제6호. 제7호.제12호”로 한다.

제36조제3항제5호 “영 제38조제1항제5호” 를 “영 제38조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 “영 제38조제1항제24호” 를 “영 제38조제1항제23호”로 한다.

“부칙 제3조(사용.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.수익 허가.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”를 신설 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사용.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)</p> <p>① <u>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(연체료.변상금을 포함한다)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0조(사용.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)</p> <p>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<삭제></p>
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페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1. 영 <u>제38조제1항제7호. 제8호. 제13호</u>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영 <u>제38조제1항제5호</u>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</p>	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</p> <p>①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페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1. 영 <u>제38조제1항제6호. 제7호. 제12호</u>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</p> <p>2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5. 영 <u>제38조제1항제4호</u>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</p>
<p>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</p> <p>① 영 <u>제38조제1항제24호</u>에 의하여 할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-----</p>	<p>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</p> <p>① 영 <u>제38조제1항제23호</u>에 의하여 할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-----</p>
<p>부칙</p> <p>제1조(생략)</p> <p>제2조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부칙</p> <p>제1조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2조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3조(사용.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.수익허가.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.</p>